

- 2025 회계연도 -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 11. 25.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 2024. 11. 7.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23,937,393	13,629,489	10,307,904	75.63
세 출	52,125,406	41,546,004	10,579,402	25.46

3. 세입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937,393	13,629,489	10,307,904	75.63
일반회계	4,503,051	5,215,751	△712,700	△13.66
특별회계	19,434,342	8,413,738	11,020,604	130.98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937,393	13,629,489	10,307,904	75.63
일반회계	소 계	4,503,051	5,215,751	△712,700	△13.66
	교통행정과	1,278,679	1,226,858	51,821	4.22
	교통지도과	122,580	397,900	△275,320	△69.19
	건설관리과	3,060,603	3,553,184	△492,581	△13.86
	도로과	33,500	33,500	0	0
	치수과	7,689	4,309	3,380	78.44
특별회계	소 계	19,434,342	8,413,738	11,020,604	130.98
	교통행정과	204,000	134,400	69,600	51.79
	교통지도과	19,230,342	8,279,338	10,951,004	132.27

□ 세입 검토의견

□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75.63%(103억790만원) 증액된 239억 3,739만원(일반회계 45억305만원, 특별회계 194억3,4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 건설교통국은 금년대비 △13.66%(7억1,270만원) 감액된 45억3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은

- **교통행정과**는 금년대비 4.22%(5,182만원) 증액된 12억7,86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267만원(982만원 증가),
 -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3억5,800만원(4,100만원 증가),
 -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범칙금 1,800만원 등임.

- **교통지도과**는 금년대비 △69.19%(2억7,532만원) 감액된 1억2,258만원으로,
 - 과태료(운전자 과태료,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로 1억2,258만원,
 - 세입이 크게 감액된 것은, 길음환승주차장 지역 재개발 사업실시 예정으로 주차장 빌딩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2억7,532만원)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 **건설관리과**는 금년대비 △13.86%(4억9,258만원) 감액된 30억6,0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국유재산임대료 317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9,524만원(2,156만원 증가)
 - 도로사용료(주거 등 계속점용 · 일시점용 · 차량진출입 · 간판 등 · 거리가게 도로사용료)로 19억9,686만원(△3억5,250만원 감소)
 - 공유수면사용료 1억2,452만원
 - 가로판매대사용료 726만원
 - 징수교금수입(사용료 · 변상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7,249만원(△1억5,806만원 감소)
 - 도로변상금으로 5,228만원(△171만원 감소)
 - 기타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877만원(△221만원 감소)

○ 도로과는 금년과 같은 3,3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도로사용료 350만원과 맨홀인상비 3,000만원임

○ 치수과는 금년대비 78.44%(338만원) 증액된 76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임.

□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

○ 교통행정과는 금년대비 51.79%(6,960만원) 증액된 2억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임.

○ 교통지도과는 금년대비 132.27%(109억5,100만원) 증액된 192억3,03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주차요금수입(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22억2,923만원, 공영주차장 수입 7억3,243만원,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입 1억890만원, 시네마부설주차장 수입 7,761만원)으로 31억4,818만원(△4,114만원 감소)
- 견인 및 보관료 등으로 1억680만원(1,116만원 증가)
-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9,632만원(432만원 증가)
- 주정차위반 과태료 14억7,328만원(△4,735만원 감소)
-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19만원(△1억8만원 감소)
- 시비보조금으로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 3,500만원,
- 순세계잉여금으로 137억7,055만원(111억2,410만원 증가) 등임.

4. 세출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2,125,406	41,546,004	10,579,402	25.46
일반회계	32,528,349	32,951,899	△423,550	△1.29
특별회계	19,597,057	8,594,105	11,002,952	128.03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2,125,406	41,546,004	10,579,402	25.46
일반회계	소 계	32,528,349	32,951,899	△423,550	△1.29
	교통행정과	2,554,555	2,392,690	161,865	6.76
	교통지도과	13,680	13,680	0	0
	건설관리과	1,153,257	1,035,505	117,752	11.37
	도로과	18,485,463	19,585,547	△1,100,084	△5.62
	치수과	10,321,394	9,924,477	396,917	4
특별회계	소 계	19,597,057	8,594,105	11,002,952	128.03
	교통행정과	12,232,324	324,324	11,908,000	3671.64
	교통지도과	7,364,733	8,269,781	△905,048	△10.94

□ 세출 검토의견

□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5.46%(105억7,940만원) 증액된 521억 2,540만원(일반회계 325억2,834만원, 특별회계 195억9,7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교통행정과**는 금년대비 444.23%(120억6,986만원) 증액된 147억8,687만원(일반회계 25억5,455만원, 특별회계 122억3,2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 신규 사업으로

-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중 시설비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1억원 (500만원×20개)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¹⁾ 1억8,000만원,
- 마을버스 운행 개선 중 마을버스 노면 버스정류장 설치(디자인 설계비, 설치비)로 4,000만원
- 자동차관리 자산취득비로 순번대기 발행기와 표시기 770만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보다 적은 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5.19>

- 주차장 건설 117억8,900만원,
- 성북동 348-11 공공용지 대부료 300만원,
- 디지털복합기 구입 660만원 등임.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중 차 없는 거리 등 교통안전요원 운영비로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중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1,326만원 증액된 1억8,180만원과 시설비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설치, 방치자전거 보관소 정비공사) 2,500만원 증액된 3,400만원,
-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으로 1억1,6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 (시 2억400만원, 구 1억3,600만원)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으로 △1억2,570만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 1억3,600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이며,
- 행정운영경비 중 △7,649만원 감액된 6억4,3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이었던 국내여비에 80%를 적용하여 감액된 것임.

○ 교통지도과는 금년대비 10.93%(△9억504만원) 감액된 73억7,841만원(일반회계 1,368만원, 특별회계 73억6,4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주차실태 전수조사 연구 용역 2억1,000만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단속원) 여비 5,376만원,
- 시네마부설주차장 자본예산 사업비로 5,658만원,

■ 주요 증액사업은

- 불법주정차 단속 중 민간위탁금인 자동차 견인 대행비로 △2,400만원 감액된 6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견인 대행비로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6,800만원 편성됨.
- 도시관리공단 자본예산 사업비(주차관리팀)로 6억9,154만원 증액된 9억3,252만원,
- 예비비로 4,053만원 증액된 9,053만원,

■ 주요 감액사업은

-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로 △1억6,535만원이 감액된 3억1,39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전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 차량유지관리비 휘발류 1,296만원→324만원,
 - CCTV 통신사용료 1억3,392만원→1억176만원,
 - 우편요금 1억1,306만원→9,098만원,
 - 전자우편요금 9,776만원→7,590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임.
-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7억8,083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부서 인건비를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임.

○ **건설관리과**는 금년대비 11.37%(1억1,775만원) 증액된 11억5,325만원으로,

- 신규 사업으로는 노점상(적치물) 정비 중 바디캠 구입비 195만원(65만원×3개)이며 크게 감액된 사업은 없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 광고물 관리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1,043만원 증액된 3,100만원,
- 유동광고물 관리 중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로 5,141만원 증액된 9,135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옥외광고시설물 운영으로 1,193만원 증액된 2,141만원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으로 1,960만원 증액된 4,000만원
-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0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 등임

■ **옥외광고정비기금²⁾(2020년)** :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28.11%(△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옥외광고물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0.12.31.)
3.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0.12.31.)
4.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 (개정 2020.12.31.)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개정 2020.12.31.)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20.12.31.)

9,112만원) 감액된 2억3,302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위원회 심의수당 112만원, 폐현수막 재활용 공유유산 제작 1,500만원과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으로 1억2,000만원임.

○ 도로과는 금년대비 △5.62%(11억8만원) 감액된 184억8,546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 구 소규모 편익시설(도로) 설치공사로 1억3,100만원 증액된 30억9,100만원
 - 종암로19길 24 일대 19억원
 - 아리랑로 16길 일대 2.64억원
 - 보문로32길 일대 6.3억원
-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5억5,440만원 증액된 37억350만원
 - 포장도로 연간단가 17억원
 - 정릉로10길 7.74억원
 - 월곡로7길 5.76억원
 - 관내 보도 실태조사 용역 1억원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2억원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5억746만원 증액된 53억404만원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04.24.]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3억원
-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억원
-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2억원
- 창경궁로43길 등 2개소 9억원
- 돌곶이로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2.5억원
- 바람마당교 등 2개소 부수 공사 2억원
- 과속방지턱 성능개선 3.2억원
- 구단위 주민참여 : 정릉308교 보수공사 1억원, 정릉초 캐노피 설치 1억원, 석관래미안 앞 도로 정비 2억원
- 동 주민참여(6건) : 성북로일대 점자블록정비(성북동) 2,000만원, 성북로26길 나무계단정비(성북동) 2,000만원, 숲속어린이공원 주변 계단정비(정릉1동) 2,000만원, 서경로86 앞 계단 논슬립설치(정릉1동) 2,000만원, 홍천사굴다리 앞 미끄럼방지포장(정릉2동) 1,500만원, 청덕초 버스정류장 낙석방지망설치(정릉3동) 2,000만원, 돌곶이역 1번출구 뒷골목 도로 정비 2,000만원
- 제설대책 추진으로 4억3,762만원(공공운영비 1억1,904만원 증가, 다목적트럭 구입 2억700만원 증가) 증액된 20억399만원,

■ 주요 감액사업으로

- 조명등 유지보수로 △4억2,168만원(공공운영비 △2억5,194만원, 시설비 △1억8,635만원) 감액된 31억7,511만원,
-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2억9,440만원 감액된 2,548만원 등임.

■ 도로굴착복구기금³⁾(2009년) :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11.02%(△

8,622만원) 감액된 6억9,639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인건비 4,611만원, 사무관리비 2,979만원,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굴착도로정비공사 등으로 10억500만원 등임.

○ **치수과**는 금년대비 4%(3억9,691만원) 증액된 103억2,139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3,000만원 증액된 35억3,792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로 3억1,646만원 증액된 26억2,747만원,
- 하천시설물 관리로 1억8,462만원 증액된 22억8,350만원,
-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으로 4,013만원 증액된 3억968만원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펌프장 유지관리로 △3,383만원 감액된 2억6,080만원,
- 인력운영비로 △2억5,098만원 감액된 것은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지난년도에 편성되었던 퇴직금 2억4,800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 업무 (개정 2020.12.31.)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20.12.31.)

문임.

-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⁴⁾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
- 4)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